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229700 군사법경찰의 과도한 개인정보 질의
진 정 인 000
피 해 자 상동
피진정인 000(해군 군사사법경찰관)

주 문

1. 해군참모총장에게, 피의자조사의 개인정보 항목 기재는 범죄의 성립과 양형판단에 기준이 되는 항목만 선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현재 검토 중인 피의자 신문제도 개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시 진정인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최중학력, 입대전 직업, 가족사항(가족들의 나이 및 직업 등), 종교, 주량, 흡연

량, 생활정도(동산과 부동산 금액), 출신 고등학교, 학창시절 동아리 등 개인 정보를 신문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인 진술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 군사법경찰대는 피의자 신문 시 모든 피의자를 대상으로 신분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인정신문(소속, 군번 등)과 피의사실 등에 따른 추가 신문(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종교관계 등)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문절차는 피진정인 그리고 피진정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해군 군사경찰대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피의자 신문절차는 민간 경찰의 수사준칙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민간 경찰과 유사한 수준의 피의자 인정신문 및 피의사실에 따른 추가 신문이라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1) 관계인 1(해군 군사경찰대)

모든 해군 군사경찰대대는 피의자 신문시 통상적인 인정신문(소속, 군번 등)과 피의사실 등에 따른 추가 신문(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종교관계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통상적인 인정신문을 제외하면 각기 다른 혐의의 모든 피의자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신문을 하고 있지 않고, 각각의 사건에 대해 담당 수사관 판단 하에 피의사실과 관련한 추가 신문을 실시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모든 피의자 신문 시 양형판

단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다.

2) 관계인 2(국방조사본부)

현재 각 군에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68조와 같은 국방부 자체 규정은 없으며, 상위법령에 의한 위임이나 준용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위 규정을 원용(援用)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 군과 함께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라. 참고인(경찰청 수사기획과)

「범죄수사규칙」 제68조는 피의자 조사 시 신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신문 시 범죄사실 외에도 재판단계에서 피의자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정상(情狀)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피의자의 정상에 관한 내용은 임의적 질문사항이다. 경찰청에서는 2019. 8. 29. 관련 지침을 통해 피의자 신문 시 해당 사건 및 피의자의 정상 참작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질문은 지양하고, 특히 건강 상태 확인 수준을 넘어 특이 질병이나,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등에 대한 질문은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지양하도록 하였다. 가령, △ 특이질병은 요양급여내역 부정수급 혹은 보험사기 사건 수사 관련, 피의자의 병원 방문 내역 및 질병명 등을 통해 허위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등에, △종교는 특정종교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 등에, △혈액형은 범죄현장 등에서 혈흔이 발견되어 식별이 필요한 경우 등에, △정당·사회단체 가입여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국가보안법·집시법 위반 사건 등 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 확인이 수사상 필요한 경우 등에, △특정 사이트 가입 여부는 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범죄인 경우 등에 한하여 질문하도록 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1조는 피의자 신문 시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질문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2조는 피의자 신문 시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인은 해군 OO소속 군인으로서 복무 중 피진정기관 조사실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았다. 피진정인은 이 조사에서 진정인의 종교, 주량, 흡연량, 재산, 병력 및 제대 후 경력, 출신고등학교, 학창시절 동아리 등에 대한 질의를 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를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피의자의 범죄 정상과 관련 없는 정보를 수집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앞서 살펴본 여러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의자 신문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근거규정이 있고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 모든 사항에 대한 신문이 언제나 허용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처분이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수사 및 형벌권 행사의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진정인이 위 피의자신문 시 확인한 진정인의 종교, 주량, 흡연량, 출신학교, 동아리 등의 정보들은 극히 개인적인 정보들인바, 수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그 일률적인 수집을 지양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일 위 정보들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으로서 반드시 신문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을 피진정인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겠으나, 이 사건 피진정인의 주장은 그와 같은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사 관행임을 읊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바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범죄 정상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은, 양형판단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서 적법 절차의 원칙과 기본권 침해의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반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의자 정상에 관한 신문사항은 비단 피진정인 및 피진정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군 수사기관 전체에서 군 형사사건에 대한 피의자 신문 시 명확한 위임 범규의 근거 없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68조 규정만을 원용하여 범죄의 정상을 판단하고 양형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기록하여 온 것으로 보여지는바, 피진정인 개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하되,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군참모총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아울러, 군 수사기관이 수사의 방식 등을 원

용하여 왔던 경찰청이 이미 2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 시 신문사항을 자체적으로 개선하여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방부 차원에서도 현재 검토 중인 관련 제도의 개선을 시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바,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례를 각 군에 전파하고 제도개선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0. 13.

위원장 박찬운

위원 임성택

위원 석원정